

# 제37회 무사고운전자 선발 공고

[ 아래와 같이 10년 이상 무사고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선발하여 무사고운전자증을 수여 하고자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]

**신청기간** 2017. 1. 16(월) ~ 2. 24(금) 40일간

**신청접수처** 경찰서 민원봉사실

**신청대상(선발기준)**



**가. 신규신청**

2016. 12. 31일 기준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면서

- 10년 이상('15. 12. 31 기준, 역산) 교통사고(인적피해 교통사고 또는 음주·무면허·조치불이행 물적피해 교통사고)를 일으키지 아니한 운전자
- 표시장 신청에 따른 기간 동안 운전면허가 취소(적성검사 미필 취소 제외)된 사실이 없는 자
  - ※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해당됨

**나. 제외대상**

-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자 또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서 구급차·대여차(렌터카)·구난차·견인차,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(덤프트럭 등 대형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는 해당), 기타 특수자동차의 운전자(특별용도로 제작된 차량으로 이동정비차량, 캠핑카 등)
- 운수회사에 취업하고 있으나 직접 운전이 종사하지 않은 사람
- 기타 결격자

**제출서류** 무사고운전자증 신청서 1부, 사업체별 취업 확인서(운수회사, 조합 발급)

**표시장구분**

구분	표시장의 종류	비고
30년 이상 무사고	교통안전장	표시장 종별에 따라 별도 수여
25년 이상 무사고	교통삼색장	
20년 이상 무사고	교통질서장	
15년 이상 무사고	교통발전장	
10년 이상 무사고	교통성실장	

**참고사항**

- 가. 무사고기간 산정은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기간을 합산하되, 선발기준일(2016. 12. 31)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산정
- 나. 운전경력증명서(취업확인서)은 취업하고 있는 소속회사(조합) 또는 과거 취업했던 소속회사(조합)의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증명서에 한함
- 다.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취업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(예시 : 일십육년오월이십일로 표기)
- 라.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,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
- ※ 자세한 사항은 지방경찰청(교통안전계) 또는 경찰서(교통관리계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1월 16일

경찰청장 · 도로교통공단 이사장